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1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1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법원행정처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펴내는 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기도 하고 해결하여 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재판’이고 그러한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법, 법원, 재판제도에 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 중에 법, 법원, 재판제도라고 하면 막연히 두렵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법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청소년들이 법, 법원, 재판에 관하여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정확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알려드리기 위하여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등 주제별로 구성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재판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책자를 통하여 인권과 법치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법, 법원, 재판이라는 주제를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신 집필진 및 이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 우 중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재미 2배, 효과 2배 교재 활용법!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법의 영향력 안에서 생활합니다. 학교에서 먹는 급식, 청소년들의 게임 가능 시간, 선거에 참여해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까지! 법은 우리의 삶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법을 적용해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본 교재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법과 관련된 직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법제도나 법원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장면이 사법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사법제도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사법제도와 법원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은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법제도의 변천 과정, 법원의 구성과 종류 및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2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다루어 진로탐색의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3부 ‘변화하는 사회 속의 법원’에서는 정보화 및 국제화에 맞춰 새롭게 도입된 사법제도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을 살펴봅니다.

사법제도와 법원, 법과 관련된 직업에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필진 일동

CONTENTS



Chapter 1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1.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11
2. 법원의 구성과 종류	20
3. 재판과 법원의 기능	24



Chapter 2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

1. 여러 가지 법 관련 직업	29
2. 법률가의 역할	30
3. 법률가가 되는 길	34
4. 가상 인터뷰 : 판사를 만나다	37
5. 법원에서 만나는 다양한 직업들	41



Chapter 3

변화하는 사회 속의 법원

1. 정보화·국제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법원	47
2.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	55
3. 취약계층의 보호	61
4. 인권과 적법절차의 존중	67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1



Chapter 1



우 리 나 라
사 법 제 도 와
법 원 이 야 기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1.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2. 법원의 구성과 종류
3. 재판과 법원의 기능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생각 돋보기

사극에서 왕이나 사또가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는 오늘날의 재판 모습과 비슷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이나 처벌에는 차이가 있어요. 재판과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답니다. 그 역사를 살펴 볼까요?

전통 사회의 법률과 재판



많은 기록들이 우리 전통 사회가 나름의 정교한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을 통해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을 비롯하여 여러 부족 국가들의 법제도에 대한 사실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록들을 통해 삼국시대의 율령(律令) 정비 작업이나 사법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373년) 때, 백제는 고이왕(260년) 때, 신라는 법흥왕(520년) 때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중 고구려의 율령 중 일부를 소개하면, ‘죄를 지으면 당사자는 죽이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배상하고, 배상할 수 없을 때는 그 자녀를 노비로 삼는다’ 등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부족평의회인 제가회의에서 범죄자를 즉결처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탈해왕의 이야기는 재판에 관한 가장 오래된 우리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인터넷 검색!



• <삼국유사> 탈해왕의 재판 이야기





고려시대에는 당나라의 법을 참고해서 만든 율법 71개조가 있었고, 중앙의 재판기관으로 의형대를 두어 법률에 관한 사항과 재판을 관장하였습니다. 이후에 의형대는 추관·형관·전법사 등을 거쳐 후에 형조로 바뀌었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시대의 수도인 개성에서는 개성부의 장관이 공양왕 때부터 모든 민사사건을 재판하였고, 지방은 수령이 1심 재판을 하였으며, 안염사·관찰사가 2심 재판기관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명판결 중 손변의 유산 상속 재판을 소개합니다. 고려 후기의 문신인 손변이 경상도 안찰부사로 있을 때 부모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어느 남매의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누나에게 물려주고 남동생한테는 검은색 옷 한 벌과 모자 하나, 신발 한 켤레, 종이 한 장만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자 남동생이 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손변이 남매의 사정을 들어보니 남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무렵 누이는 시집을 간 상태였고 남동생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손변은 “부모의 마음은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똑같은 것이다. 어찌 다 자라 결혼한 딸에게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들에게만 박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너희 아버지는 아들이 자라 어른이 된 다음, 물려받은 종이에 소장을 써서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신발을 신고 관아에 호소하면 장차 이 일을 판단해 줄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가지 물건만 남겨준 뜻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변은 남매에게 재산을 반반씩 나누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을 통해 우리는 고려시대의 재산 상속에 관한 풍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고려시대의 법제 정비 사업에 관한 기록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 전통 사회의 법과 관련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1권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법전화 사업은 민족 고유의 법전을 마련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기틀을 확립한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치자의

자의(恣意)가 아니라 객관적인 법에 근거하여 백성을 다스린다는 태조의 창업 이념이 마침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왕명(王命)을 기다려 일을 처리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늘 개별적인 왕명에 따르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거니와, 왕명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전후의 왕명이 서로 모순되는 일도 빈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통일적 체계를 갖추면서 일반적·추상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문 법전을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은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의 순서로 구성된 방대한 종합 법전입니다. 특히 재판에 관한 조항들이 형전에 수록되어 있고, 판결문을 포함한 각종 공문서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조항들이 예전에 수록되어 있는 등 〈경국대전〉은 여러 곳에서 사법제도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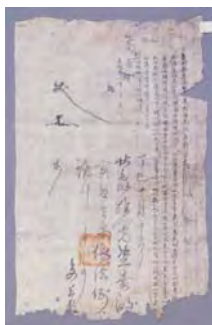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사법권의 독립은 갑오개혁 시기에 이르러서야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행정과 사법 기능을 아울러 담당하는 관료 기구를 통해 재판 업무는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독자적인 상소제도까지 갖추고 있어서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재판 규정에 따르면 우선 모든 민사사건과 태형(笞刑)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재판은 일차적으로 지방 수령이 담당하였습니다. 지방 수령의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각 도(道)의 장관이라 할 수 있는 관찰사에게 항소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의송(議送)이라 불렀습니다. 의송이 있으면 지방 수령은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송에 의한 재판에서마저 패소할 경우가 있겠지요. 이 경우에는 중앙의 형조(刑曹) 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감찰·탄핵 업무를 담당하던 기구인 사



소지(所志)
소지단자(所志單子)라고도 하며, 오늘날의 소장(訴狀)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1557년 손상서의 부인 정조이의 의송



헌부(司憲府)에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수령이 뇌물을 받아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경우와 같이 직무상의 비리가 문제될 경우가 있으니까요.

조선시대의 명법관과 판결



과거 전통사회의 재판에서는 수사와 판결이 하나의 주체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아래 전국을 순회하며 부조리를 처단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줬던 어사 박문수나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우리나라에 길이 남을 명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는 조선 후기 영조 임금 시대의 유명한 암행어사였습니다. 전국을 순찰하며 관리들의 비리나 치적을 밝혀내고, 해당 고을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암행어사는 오늘날의 법관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것이죠. 박문수는 고위 관리들에게도 굽힘이 없이 늘 공명정대했으며, 지방을 순찰하며 수많은 미담을 남겨서 우리에게도 영웅과도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의 결백을 입증하고 도리어 진짜 죄인을 찾아서 처단한 이야기, 부정부패와 횡포를 부리는 악질 관리들의 죄악을 밝히고 이들을 처단한 이야기 등은 박문수의 공적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또 한 명의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실학자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할 정도로 대단한 학자이자 정치가이기도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가운데 <흙흙신서(欽欽新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정약용 자신이 직접 처리했던 여러 미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록과 명쾌한 판결내용을 정리하여 집필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정약용은 뛰어난 명법관이자, 과학수사관으로서의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함봉련 사건’은 함봉련이 나졸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형 집행이 연기되고 있던 것을 정약용이 수사·판결하여 무죄 방면한 사건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어느 마을의 나졸이 세금을 미납한 양반 김태명을 찾아가, 세금을 안 낸 대신 소를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김태명은 나졸을 내동댕이치고 그 위에 올라타서 목살을 잡고 가슴팍을 몇 차례나 짓눌렀습니다. 나졸은 여기서 간신히 빠져나와 도망을 갔지만 김태명은 자신의 머슴이었던 함봉련을 시켜서 ‘저 자는 소도둑이니 혼을 내어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함봉련은 나졸의 뒤를 쫓아가 다시금 등을 강하게 떠밀어 밧고랑에 고꾸라지게 만듭니다. 나졸은 다시 일어나 집으로 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되었고, 함봉련은 살인죄로 체포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의 2차 수사를 맡았던 정약용은 초기 수사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사체 검안서에서 나졸의 가슴에 심한 멍이 있었고, 죽기 전 나졸이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이지경이 된 것은 함봉련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 등을 확인하게 되죠. 정약용은 이를 종합하여 함봉련은 등을 떠밀었지만 그 전에 김태명이 나졸의 가슴을 짓밟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진범은 함봉련이 아닌 김태명이라는 판결을 새로이 내리게 됩니다. 당시 그 고을의 유력자였던 김태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던 사안을 합리적인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진범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뛰어난 명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명법관이 많았다는 점을 살펴보니, 오늘날의 사법제도가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음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기지개를 켜는 근대적 사법제도



이후 1894년 청·일전쟁의 혼란 속에서 단행된 갑오개혁을 통해 우리의 사법제도도 근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까지 최고의 사법기관은 국왕이었는데, 국왕의 재판권이 폐지되었고, 노비제 폐지 등에 따른 신분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형사 재판제도 전반을 개혁하게 됩니다. 국왕의 재판권 폐지는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을 구분지었다는 점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어냈다는 커다란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로부터 1년 후인 1895년에는 고종이 헌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

포하게 됩니다. 14개 조항 가운데 13번째 조항을 살펴보면 ‘민법과 형법을 엄명하게 제정하고 가히 감금과 징벌을 남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4월 19일에는 ‘재판소구성법’이 반포되어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완전한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 계기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법의 날’도 4월 2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반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재판소구성법은 장차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어서 행정권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재판을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나아가 재판소구성법 제3조를 보면 재판 담당자와 소추 담당자를 분리하여 모든 재판소에 별도의 검사를 두도록 하였지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수사와 판결이 같은 주체에 의해 진행된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사건을 관할하는 경우, 죄가 있다는 의심을 토대로 자신이 죄인을 소추하고서 이와 반대되는 무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모순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소추 내용에 걸맞은 범죄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 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 과정에서 고문과 협박, 거짓진술 등과 같은 인권침해 행태가 자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소구성법은 소추 담당자와 재판 담당자를 분리하여 고문을 금지하고 사법과정에서의 인권을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갖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 역시 이를 통해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법제도의 근대화는 근대국가 건설과 인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절차였던 것입니다.



홍범14조 선언(1895)

제1 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대한민국 건국과 사법부의 수립



이후 일제시대와 미군정기를 거치는 역사적 질곡 속에서 우리의 사법부는 많은 시련도 겪게 되고, 독립성을 크게 훼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사법부도 그 체계와 기틀을 제대로 갖추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국권



제헌절 기념 우표

상실과 식민 통치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현재와 같은 민주적 사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같은 해 8월 5일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김병로 선생을 초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

흘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다음날인 16일에는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했는데요. 취임 연설에서 사법부가 다른 방면으로부터 강제를 받거나 어떠한 정실이 개입된다면 아무리 소신 있게 나아간다 하더라도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법령을 제정하고 사법기관이 철저한 소신과 유감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그야말로 신생국가의 새로운 사법부 창설에 걸맞은 연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건국 초기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을 가진 의식있는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사법부는 점차 안정화되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사의 중심에 선 사법부, 그리고 내일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오랜 시련을 견뎌온 것처럼 사법부도 역사의 중심에서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96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후 현역 대령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고, 대법관 인선에도 군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사법권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법원 탄압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지요. 1971년에는 군사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판사 150여 명이 사표를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사법권에 대한 압력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사법파동’입니다.

이후 1988년에도 다시 한 차례 소장 판사 300여 명을 중심으로 제5공화국 군부 세력의

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사법부의 쇄신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2차 사법파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군사정권의 협박 속에서도 사법부의 엄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끈기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기의 혼란 속에서 이에 동조하여 그릇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자구적인 반성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부 스스로 잘못된 판결을 선정하고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노력은 오늘에까지 이어져 대법원을 필두로 한 사법 주체들의 개혁에도 본격적인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사법개혁 6대 법안이 추진되었고, 2003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국민 형사재판참여제도, 형사소송법 대폭 개정 작업 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제도가 발전을 거듭해 최근에는 외국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국제법률심포지엄 개최, 전자소송시대의 개막 등의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으니 가히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사법부가 지금까지 일궈온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앞으로 더욱 멋지게 발전할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국민 여러분의 건전한 관심과 비판 속에서 사법부는 더욱 공명정대한 기본권 수호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현명한 법관 이야기 ①

가인 김병로 선생은 정의를 바로 세운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법원장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변호사로서 독립운동을 변호하는 무료 변호를 맡았고, 대한민국 건국 후에는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기본 법률의 초안을 직접 담당하여 법치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특히 기본법 초안 작성 작업을 할 때 6·25 전쟁이 발발해 그 때까지 연구한 성과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기억과 생각에 근거하여 붓을 들고 직접 기본법 초안을 작성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김병로 선생은 건국 초기 사법권 독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이와 관련된 일화인 ‘서민호 의원 사건’을 살펴볼까요?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서민호 의원이 자신을 살해하려던 서창선 대위를 죽였습니다. 제1심(부산지방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이유로 서민호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도대체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될 말인가?”라고 했지만, 김병로 선생은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병로 선생의 청렴에 대한 일화도 살펴볼까요? 박봉에 시달리던 시골의 한 판사가 사표를 들고 김병로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나도 죽을 먹으며 산다. 함께 참고 고생해 보자.”라고 그 판사를 만류했고, 그 판사는 사표를 거두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법관들에게 오직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하는 등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 김병로 선생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명한 법관 이야기 ②

김병로 선생과 함께 법조계에서 사법부 독립의 기틀을 세운 인물로 존경받는 **김홍섭 선생**을 소개합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해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광복 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됐으나 검사직에 회의를 느껴 그만두고 농사를 짓다가 법원의 간곡한 요청으로 판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대법원 판사, 광주고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원장으로 재직하던 1965년 3월 간암으로 타계했습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법원에서 출세를 거듭하고 판사로서 화려한 생활을 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홍섭 선생은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 속에서 “법관은 모름지기 겸허한 자세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양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탈색한 군복 바지에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양복저고리를 입고 옆구리에 사건 기록과 단무지 도시락을 든 채 매일 집에서 법원까지 걸어 다녀 청렴한 법관의 표상으로 꼽혔습니다. 생전에 많은 사형수를 찾아다니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수인(囚人)들의 아버지’, ‘법의(法衣) 속에 성의(聖衣)를 입은 사람’ 등 칭호를 얻었습니다.



법원의 구성과 종류



생각 돋보기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지만, 나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기관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의 역할과 종류를 살펴보면 서 법원과 가까워져 볼까요?

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법원은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한발 떨어져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은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침 없이 무엇이 공정한지를 밝힘으로써 분쟁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잘 마무리 지음으로써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국가의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원이 사법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법권이란 구체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분쟁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권한입니다.

제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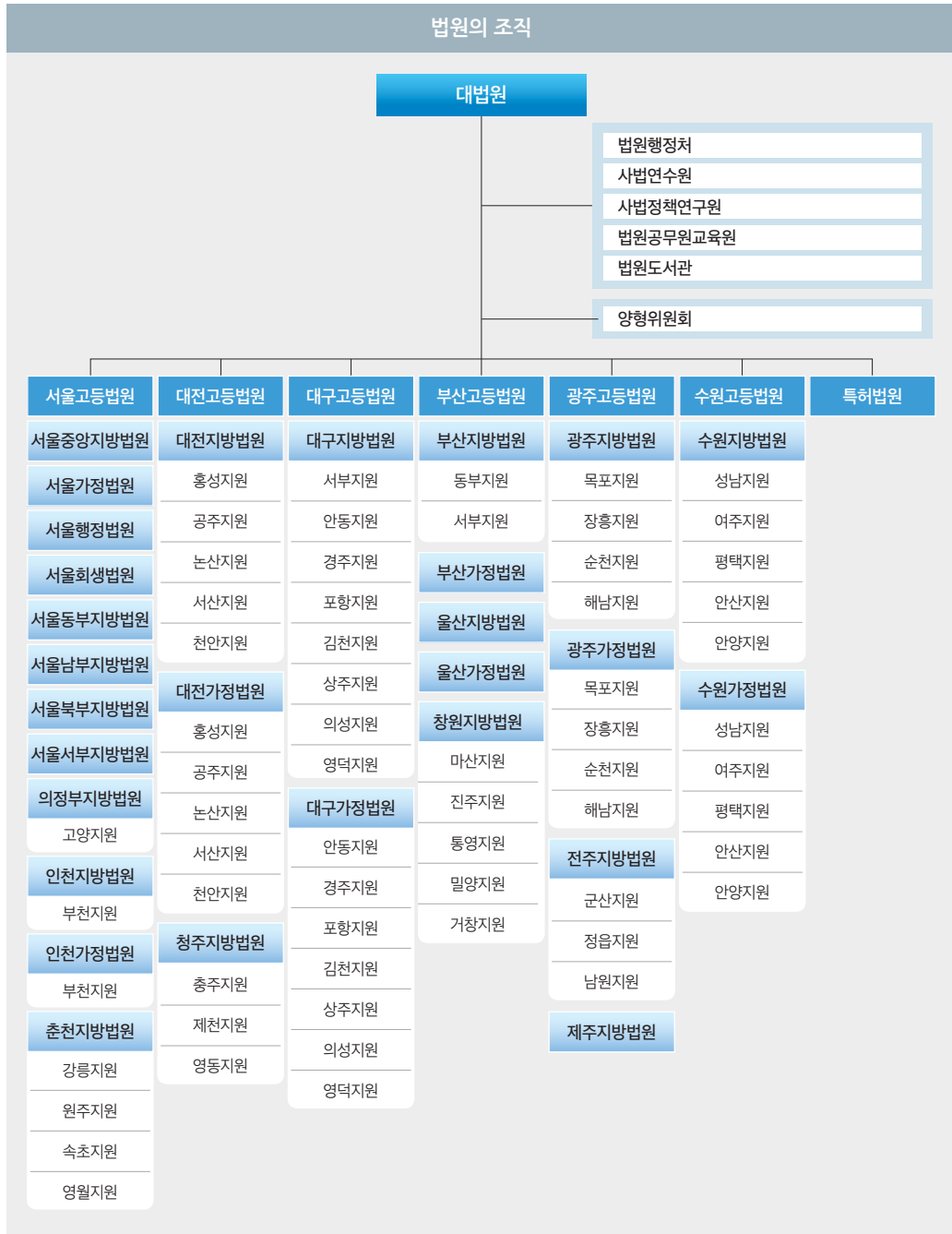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법원의 조직과 구조는 어떤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됩니다. 최고 높은 법원은 대법원이라 했으니 각급 법원은 대법원보다 하위 단계의 법원이라 할 수 있



습니다. 법원의 종류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전문법원 중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전국에 1곳, 고등법원은 전국에 6곳, 지방법원은 전

국에 18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있는 곳도 관할 구역이 넓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불편하거나 너무 많은 사건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21쪽 그림을 보면 법원의 조직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단 한 명도 억울하지 않도록, 심급제도!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법원의 조직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과 같은 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둔 건 법원이 판단한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 국민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예를 들어,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만약 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등법원에,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사이에 단계를 두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여러 번의 재판을 거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혹시라도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실수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죠. 심급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질서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기본적으로 3심제로 운영됩니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그리고 행정소송과 군사재판 등은 모두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하여 3심제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허소송에 관해서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심결)을 1심판결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소송 자체 구조는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

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소송이 3심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3심제를 통해 선거효력에 대한 무효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버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 무효결정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판, 다양한 법원



우리 생활에서의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와 관련된 분쟁, 국가기관과 관련된 분쟁 등과 같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의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원 가운데에는 특정한 영역의 업무만 담당하는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가정과 가족, 소년에 관한 다툼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법원입니다. 행정법원은 행정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특허 분쟁을 전담하는 곳은 특허법원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하는 일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궁금해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언뜻 보면 법원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별개의 기관입니다. 어디가 더 상위 기관인지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두 기관이 맡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주로 개인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주관소송을,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객관소송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국민의 기본권이 독재자와 같이 통제되지 않는 정치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어 법원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합니다.

클릭! 인터넷 검색!



- 대법원-대한민국법원
<http://www.scourt.g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재판과 법원의 기능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지금보다 정의롭게 된다면 자신의 삶 또한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사회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저마다 다른 능력과 소질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비로소 사회가 정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정의로운 사회는 작은 토피바퀴와 같은 개인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시계태엽과 같은 사회였던 것입니다. 확실히 이런 사회에서라면 사회 부정의와 같은 뼈격저림은 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는 아마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직분에 충실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조차 만만찮은 뼈격저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 법, 사법제도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아마도 ‘뼈격저림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의로운 사회’ 아닐까요?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갈등에 눈감아 버리고 그 해결은 오로지 당사자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는 사회나, 폭력에 호소하여 갈등을 잠재우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 해소에만 급급한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사회의 뼈격저림을 해결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적이고도 중립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는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사회에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법제도가 해결해야 할 사회의 뼈격거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쟁의 해결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는 뼈격거림입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저마다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어느 한 당사자의 논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원이라는 중립적 기관이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과 질서의 유지

둘째로, 사회 혼란이나 무질서라고 하는 뼈격거림입니다. 여기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인한 혼란,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한 혼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보복 행위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법제도는 이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고 종식시킴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자의 기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 추구

셋째로, 사회가 개인들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공동체 전체의 몰락을 초래하는 뼈격거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의 권력자가 공적인 힘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국민의 뜻과는 다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국가 전체가 파국적 상황을 맞게 되었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으로써 권력을 통제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사법제도는 바로 이러한 기능의 한 축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유력 인사의 모습은 결코 낮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인권과 정의의 수호

마지막으로, 기본적 인권과 정의를 유린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퇴보하게 만드는 뼈저린 것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숭한 희생을 거쳐 비로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목록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 진보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 바로 사법제도였습니다. 인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법이라는 형식으로 보장하고, 그렇게 보장된 자유와 권리는 사법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동시에 사법제도는 이러한 권리의 수호 및 원칙의 실천을 통하여 인류의 성취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Chapter 2



우 리 나 라
사 법 제 도 와
법 원 이 야 기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

1. 여러 가지 법 관련 직업
2. 법률가의 역할
3. 법률가가 되는 길
4. 가상 인터뷰 : 판사를 만나다
5. 법원에서 만나는 다양한 직업들



여러 가지 법 관련 직업

법이란 것이 차갑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이 한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과 필요한 제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규칙과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법이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과 관련이 있는 직업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변리사, 근로자의 권리를 찾도록 돕는 노무사,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 과세 문제를 다루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 대리 등을 하는 법무사,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법률사무원,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사도 법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지금부터 법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까요?



법률가의 역할



생각 돋보기

법정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 있나요? 피고인을 위해 열변을 토하는 변호인, 피고인의 죄를 묻는 검사, 이를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판사는 모두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는 법률을 연구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법률가는 법률을 연구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률가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포함되죠. 그럼 각 법률가들의 역할을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판사의 역할



판사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판사는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를 **법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법관에는 지방법원 · 고등법원 · 가정법원의 판

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포함됩니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재판과 관련된 업무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죄라면 법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고해야 하지요. 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유·무죄를 가리기까지 몇 번의 공판이 진행되고, 판사는 그 기간 동안 증거를 채택하고 재판을 주관합니다.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민사 분쟁을 판단합니다. 대립하는 쟁점이 치열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서 판사들은 손에 낀 골무가 닳도록 기록을 살펴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사의 역할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재판 관련 업무와 절차가 복잡한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판사의 판결 내용이 여러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판결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무죄판결로 범죄자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요. 민사재판의 경우 주거상태나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판결은 이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의 사실상 판단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판사는 보다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 하니, 판사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다면 판사는 책상이나 법정에서만 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의 한쪽 당사자가 “판사님, 직접 가서 보시고 판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판사가 그 지역으로 직접 가서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판사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전담 판사, 파산한 회사를 관리하는 파산부 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900여 명의 법관이 법원의 주요업무인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



검사는 다양한 재판 중 주로 형사재판에서 역할을 합니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 받는 사람이 정말로 죄를 저질렀는지, 죄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재판이잖아요? 검사는 형사재판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고(공소제기), 피해자를 대신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검사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에 이르기까지의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여 피의자¹⁾를 수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또한 법원에 형사재판절차를 개시해달라는 의미에서 공소²⁾를 제기하며, 그 후에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법률문제를 검토한 후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처럼 검사는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므로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수행자가 되어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과정이나 소송 진행과정, 그리고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행위 또는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민사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변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1)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호인의 역할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의뢰인을 위해 멋지게 변론하는 변호사가 떠오르죠?

실제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일이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일반 국민들이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계약서 검토, 분쟁 협상 등 기업 법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M&A, 상사 분쟁, 연예, 스포츠 에이전트 등의 분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례를 살펴볼까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박지성 선수, 모두 알지요?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은 박지성 선수를 배출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그 선수를 키워 준 클럽이나 학교에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들조차 이런 규정이 있는지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한 변호사가 이 규정을 찾아내어 박지성 선수의 모교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립하여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가, 사법권은 법원이, 행정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죠. 그중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은 쉽게 말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원 즉,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사도 재판에 참여하니까 사법부 소속일까요?

검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검사와 판사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다면, 사건을 조사하는 주체와 재판을 하는 주체가 같은 기관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기 어려워지겠죠?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검사는 행정부에, 판사는 사법부에 속해 있습니다. 즉, 삼권 분립에 의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에서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변호사는 어떨까요? 변호사는 소속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 변호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로펌(law firm), 기업,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도 있어요.



법률가가 되는 길



생각 돋보기

앞에서 살펴본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흥미로워 보인다고요? 법률가가 돼서 사회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그럼 이번 장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을 다루고, 재판을 통한 판결이나 결정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어야 해요. 그래서 법률가가 되려면 국가에서 치르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고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과거에 사법시험제도가 있을 때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직접 판사로 임용하여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사 임용 제도보다는 법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추어야 함이 점차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판사 임용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도표는 판사의 임용 절차입니다. 판사로서의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판사 임용 절차에 신청하게 되면, 여러 단계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관으로 선발합니다. 절차가 매우 여러 단계이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네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제1권





검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가 되고 싶나요? 검사가 되고 싶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별도로 법무부에 서 주관하는 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의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간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받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학사, 석사, 박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전국에 있는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아야 해요. 이때 꼭 법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을 거쳐야 진학할 수 있어요.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갖추었는지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되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둡니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는 일 등을 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만큼 큰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을 정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라, 뭔가 이상한가요?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선거로 선출하는데,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지 않는 게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법권 역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권한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다고 법관이 모두 훌륭한 자질과 충분한 법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경기에서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주면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선수나 관중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수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수의 올바른 목소리가 외면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수나 관중이 직접 뽑지 않는 것처럼 법관도 꼭 국민이 뽑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뽑는 데 관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확인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제1권





여러분, 민재가 판사님을 직접 만나러 갔다고 해요. 우리 한 번 같이 따라가서 판사님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꿈에 그리던 판사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다. 나는 햇살중학교 신문 동아리 소속인데 이번 취재 내용 중 법관을 인터뷰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빨리 내가 하고 싶다고 자원했다. 다행히 담당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친구 분이 학교 근처에 있는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신다고 하여 인터뷰를 연결해주셨다. 오메 좋은 거~~ 오늘을 위해 가장 단정한 옷도 입었다. 자, 이제 카페 문을 열고 열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

민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두리번거린다.

판사 (일어나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 ‘어.. 생각보다 판사님이 피곤해 보이시네. 내가 쉬는 시간을 뺐은 거 같아서 죄송하다.’ 판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판사 아... 요즘 일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네요. 하하.

나 허걱.. 많이 바쁘세요? 판사는 점잖게 법정에 앉아서 법봉을 두드리며 판결문을 읽으면 일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판사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재판에서 법봉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일과는 만만치 않아요.

나 네! 그래서 햇살중학교를 대표해서 저 김민재가 판사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판사는 멋진 법복을 입고 근엄하게 판결문을 읽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얼마나 일이 많으신가요?

판사 우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소개할게요. 저는 법원에서 영장을 책임지고 있는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전문적으로 결정하죠. 제 하루는 생각보다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시간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빡빡하게 일정이 돌아가는지 보이죠?

나 으악! 판사가 되기 위한 시험 공부할 때만큼 힘들어 보이는 일정인 것 같아요!

영장전담 판사의 하루 일정

시간	일정
오전 8시 30분 ~ 10시 30분	영장청구서 및 오전 심문 기록 검토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미체포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낮 12시 ~ 오후 1시	점심 식사
오후 1 ~ 3시	오후 심문 기록 검토
오후 3 ~ 6시	체포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오후 6 ~ 7시	저녁 식사
오후 7시 ~	사건 기록 검토 및 발부/기각 결정

판사 영장전담 판사가 하는 일이 특수해서 더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매일 봐야 하는 기록만 수천 쪽이 넘을걸요? 쟁점이 치열한 사건은 기록이 수만 쪽에 이를 때도 있어요. 판결문을 법원직원이 작성한다고 생각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판사
(출처 : 동아일보)

요. 단독판사의 경우, 모든 판결문을 스스로 작성하고, 합의부의 경우에도 주심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해오면 재판장 또는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검토하고 수정한 다음 판결문을 완성합니다. 판사들이 판결문 하나를 쓰는 데 들이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지만 하루 만에 똑딱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1, 2쪽짜리 형식적 판결문은 제외하고 일반사건 판결문은 짧게는 2~3일, 길게는 한 달 넘게 붙잡고 써야 할 때도 있어요.

나 엄청나네요! 일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부분을 듣고 싶어요!

판사 판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그중 가장 보람을 느끼

는 때는 판결을 통해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고, 사회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재판의 경우, 부담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뿌듯합니다.

나 판사는 되기도 힘들고 된 후에도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군요. 마지막으로 판사가 갖춰야 할 자질을 말씀해주세요.

판사 판사는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며 엄격한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판사가 되려면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야 합니다. 옳음과 그름을 가리고 심판하는 판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음을 심판한다면 법원이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판결에 당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떳떳하게 심판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꿈이 판사인데... 우선 판사가 되기 위해 판사처럼 제 마음과 몸가짐부터 바르게 해야겠어요!

판사 하하, 열심히 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민재 학생의 미래가 될 겁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한 걸음 더!

첫 시각장애인 판사 임용



(출처 : 연합뉴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모든 법률 서적을 음성파일로 바꿔 들으면서 공부한 최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빼어난 성적으로 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제1호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최영씨입니다. 최씨는 고3 때인 1998년 점자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최씨는 시력이 더 떨어져 지난 2005년부터는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방에 불이 켜져 있지만 알 수 있는 정도인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섯 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2008년 제50회 사법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최씨는 수료를 앞두고 판사 임용을 지원했고 에세이 작성,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전형을 거친 끝에 최종 임용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의 법관 임용은 개인으로서 장애인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 보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2. 2. 16.

한 걸음 더!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 권오곤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 중 하나는 처벌받지 않는 (impunity) 전쟁범죄가 없게 하는 것이다.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은 전 세계에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권오곤 재판관

권오곤 재판관은 2001년에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고국제형사재판소의 부소장(2008년 ~2011년)을 역임하였습니다. 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안에서 발생한 대량학살과 반인륜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과거 뉘른베르크, 동경 전범재판소 이후 최초로 설립된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출처 : 뉴시스)

권오곤 재판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강제이주, 대량학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고,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보스니아 내전 당시 크로아티아인 및 이슬람계 주민에 대한 집단 학살 등을 주도한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2016. 3. 판결 선고 후 재판부 해산되어 임기 종료). 그중 카라지치 사건은 600여 명의 증인이 증언하고, 11,500개의 증거가 제출되었으며, 소송기록이 30만 페이지에 이르는 등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사건 중 가장 방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3월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친 권오곤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을 위한 기존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재판을 통해 실체법 및 절차법 측면에서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하고,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제정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생각 돋보기

사진 속 건물에 주목해주세요. 이 건물은 서울법원 종합청사 건물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밝히는 검사,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는 변호인, 그리고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만 일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탐구해 볼까요?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의 업무는 크게 법원사무와 등기사무로 나누어져요. 법원사무와 관련된 일은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일, 종합민원실 업무, 인사행정과 관련된 업무, 소송구조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사무직은 업무의 범위와 다양성이 넓은 편이에요. 한편, 등기사무와 관련된 업무는 부동산 관련 업무, 법인 등 등록을 관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사 등의 업무 등이 포함되죠.

그리고 법원공무원의 역할 중에 사법보좌관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요. 재판업무 중 복잡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법원에 소속된 일반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법보좌관이 경매, 독촉, 강제집행 등 비송(非訟) 사건을 맡으면서 법관들은 소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법원사무관 및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사법보좌관이 될 자격이 주어져요. 대부분은 4급 법원서기관에서 선발되며, 임기는 4년으로 원할 경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사법보좌관도 법관처럼 법복을 입지만 앞단이 다르답니다. 법관은 검은색 옷감에 앞단은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검자주색 양단을 대지만 사법보좌관은 앞단에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짙은 청색 양단을 대요.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은 ‘로클릭(law clerk)’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각급 법원에서 업무를 보조하여 사건 분석 및 통계 자료 제출,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소속된 재판부의 사건에 대하여 각 사건의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쟁점 도출, 쟁점에 대한 법리 등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판사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판결문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재판연구원이 판결문의 초안이나 조정결정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후 재판연구원들은 로펌,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곳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연수의 법조 경력을 갖춘 이후에 경력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에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데요. 따라서 가사조사관이 담당하는 조사 업무는 담당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사조사관, 소년보호조사관, 가정보호·아동보호조사관 등이 있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먼저, 가사조사관은 가사사건(이혼, 입양,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서 당사자의 성격, 생활상태, 재산상태, 가정환경, 심신상태 등 다툼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조사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자녀를 면접하는 업무도 맡고 있죠. 때로는 가사사건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차원의 도움도 줍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를 상담하고, 조언이 필요할 땐 적절한 조언을 하기도 해요. 또 이혼하는 당사자나 그들의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부부캠프 교육 등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소년보호조사관은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비행소년의 품행을 바르게 하는데 필요한 보호처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합니다. 소년의 성장과정, 생활환경, 성격, 정신상태, 비행 동기 등의 사정을 조사하는 활동을 주로 하죠.

가정보호·아동보호조사관은 가정폭력사건이나 아동학대사건을 겪은 가정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폭력 또는 학대를 한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의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폭력범죄의 동기와 원인 및 실태 등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은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또는 방황하는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과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또한 사법절차 안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죠.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 1



Chapter 3



우 리 나 라
사 법 제 도 와
법 원 이 야 기



변화하는 사회 속의 법원

1. 정보화·국제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법원
2.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
3. 취약계층의 보호
4. 인권과 적법절차의 존중



정보화·국제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법원



생각 돋보기

우리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지요. 법원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해외의 법관들도 견학을 올 만큼 뛰어나다고 해요. 세계화와 정보화에 발맞춰 변화하는 법원의 활동, 함께 알아볼까요?

사법의 정보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법업무에도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법원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국 단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종합법률정보, 사건검색정보, 인터넷 등기정보, 경매정보 등 다양한 대국민 사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법적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 등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의 생산 및 유통이 일반화되고 사법정보의 공개와 법원과의 소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대법원은 전자소송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

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컴퓨터를 통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전용 앱을 통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송달 자료 및 전자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서비스의 보급과 함께 대법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소송을 위한 준비와 소송 이후의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 유형과 관련된 기본 서식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 ☑ 소송 이전에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정보 제공 : 소송의 유형, 일반 소송 이외의 절차, 가압류 · 가처분, 사전 증거 준비 등 소제기 이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
- ☑ 소송 진행 및 기일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소송 절차, 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 증거확보 및 입증, 기일 출석 준비사항, 기일에 하는 일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안내
- ☑ 판결 이후 조치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 제공 : 강제집행 신청, 소송비용 청구, 항소 · 상고, 재산 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판결 선고 이후에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
- ☑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제공 : 소장을 수령한 경우, 지급명령결정의 경우, 민사 조정의 경우, 가압류 · 가처분의 경우, 강제집행의 경우 등 피고 · 채무자의 입장이 된 소송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 ☑ 서식작성 기능 및 다양한 작성사례 제공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소취하서, 이의신청, 주소보정서, 항소장, 개명신청서 등 주요 소송서식에 대한 작성 기능을 지원하며, 일반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성사례와 작성 방법 설명
- ☑ 사건정보열람 등 개인화 서비스 제공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을 작성한 사건에 대해 나의 문서함 등 사건 정보 열람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또한 전자소송의 시행과 함께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민사법정, 고등법원 등에 450여 개의 전자법정이 구축되었습니다. 전자법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간 전자기록 접속이 가능하고, 전자매체를 통하여 재판부와 소송관계인 모두가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사법의 정보화를 통해 소송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고 사법정보 공유의 폭을 넓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

최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8일부터 영상재판이 확대되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재판장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도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구속 이유를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과거에는 증인신문만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뿐만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영상재판이 활용되는 대상과 사유가 넓어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사법절차에의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영상재판이 활용될 수 있는 예를 살펴볼까요? 부산에 사는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의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영상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면, 먼 거리에 있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 없이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집 컴퓨터 앞에서 편안하게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해 먼 거리에 있는 당사자나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고, 시간이 없어 법정 출석을 꺼리던 의사 등 전문가들의 구술진술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증거조사가 보다 충실해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스마트한 법원의 정보화 서비스, 더 알아볼까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guide_02.jsp

대한민국 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법원명, 사건번호, 임의검색어 등을 입력하면 누구든지 민·형사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소나 관공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등기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등기과, 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법인등기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http://ekt.scour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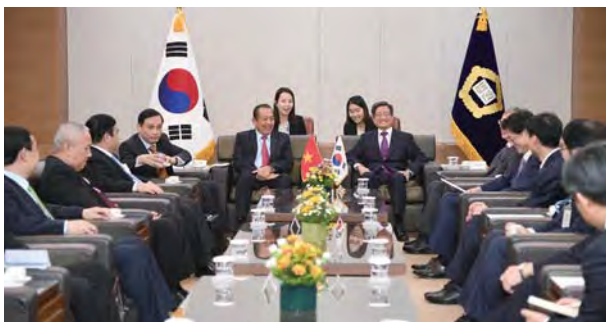


‘전자공탁’ 홈페이지는 공탁제도, 공탁절차, 공탁관련 법률 및 각종 양식, 공탁사건 검색 등 다양한 공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공탁 사건에 관하여 공탁신청,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 열람 및 사실증명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교류

우리나라 대법원은 다른 국가들과의 사법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활발한 사법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대법원장들은 취임 후 국제 사법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의 여러 국가를 공식 방문하



고 다수의 외국 사법수장 및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등 활발한 사법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소재 주요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를 방문하여 대법원과 각 국제재판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중국, 미국 등 외국 사법부와의 정기교류를 통해 사법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선진화된 사법제도와 사법운영경험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베트남 사법부의 선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인적 자원 교육 등을 위한 사업 및 협력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 대법원장들과 사법 선진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그간의 사법외교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고, 우리의 사법제도 경험을 보다 다양한 국가들과 나누며, 사법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법외교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제 사법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도 다양한 인간, 집단,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인

중, 집단, 국가 간에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제 사회는 이러한 국제적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설립하였습니다. 그중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6년 발족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입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모두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기준으로 재판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므로 오직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7일 국제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주로 국가 간의 분쟁을 취급하는 기구이므로 개인의 범죄에 대한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다루기 위해 1945년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93년에는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안에서 발생한 대량학살과 반인류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유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들은 모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쳤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지나 1990년대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종학살사태를 계기로 다시 국제 범죄를 다루기 위한 재판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집단살해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규정이 채택되었고,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대해 해당국가가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식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정창호 재판관은 2011년 8월에 캄보디아특별재판소(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ECCC)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5년 2월까지 재직하였습니다. 그는 ECCC에 재직하면서 크메르루즈 지도자의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였고, 이를 통해 ECCC가 캄보디아는 물론 국제 사회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출처 : 국제형사재판소)

또한 2014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3차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으로 선출되었죠. 2015년 3월부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9년 임기를 시작한 정창호 재판관은 계속해서 국제재판관으로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에서는 사법의 국제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당대의 세계적 이슈, 미래의 사법 및 법률가의 모습, 인류와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 등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국제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국내의 법률 환경을 선두하고, 법학계와 실무계의 전문성과 연구성과를 현실에 정착시키고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생각 돋보기

사법제도는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이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거나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사법제도 또한 수정되고 변경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사법제도 또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등장한 법학전문대학원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가정법원의 확대를 통해 사법제도의 변화 모습을 살펴봅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여러분 ‘사법시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나 동네 입구에 ‘홍길동, 제59회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뒀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이 시작된 이래 대략 2만여 명이 이 시험을 통과해 법조인이 되었어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 성적을 토대로 변호사, 검사,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으로 대체되었어요. 이제 법조인이 되려면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마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변호사시험(또는 검사시험 등)을 치러야 합니다. 법조인 선발 과정에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법시험이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다 보니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정답이 명확하고 암기력 측정 위주의 문제가 많아졌다고요. 이러한 문항을 풀기 위해 예비 법조인들은 수년간의 수험

기간 동안 반복적인 암기학습에 매달려야 했지요. 법조인은 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 법학의 고유한 논리뿐만 아니라, 법학이 아닌 다른 학문이나 사회 변화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또한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나 응시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합격률은 낮고 경쟁률은 높은 탓에 사법시험에 인생을 걸고 몇 년째 매달리다가 결국 실패한 고시생들이 누적되고 있는 문제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법학교육과 시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요.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은 2003년에 대법원 산하 기구로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논의 끝에 2004년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별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대학교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인 만큼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기당 천만 원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로 떠올라 부유한 집의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말 것을 주장했던 일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가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비싼 학비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전형을 다양화하고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후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후견은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법은 후견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예요. 후견의 종류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볼 제도는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와 함께 치매,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지닌 성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생활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성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써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졌어요. 우선,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다는 재산 관리 등 경제적 문제에만 중점을 두었고, 둘째,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였고, 셋째, 후견인이 그 임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웠고, 넷째, 경미한 심신 장애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만이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는 데에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 중 장애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여러 나라의 활동을 살펴보면 중 성년후견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였던 것이죠. 또한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추진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 비교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확인해봅시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도 비교

내용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미약)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자(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후견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친척·친구는 물론이고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후견인이 동시에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적용

민호 씨(가명, 중증지적장애)의 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장애가 있는 외아들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70대 중반이 넘는 민호 씨의 어머니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죽고 난 뒤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었어요. 가까운 친척들이 민호 씨를 위해 유산을 잘 보관하고 사용할지 확실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호 씨의 주변에 민호 씨를 도울 사람으로는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민호 씨의 사촌형 A,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 B, 민호 씨의 특수학교 담임이었던 C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평소 유대관계가 높은 A가 후견인이 되고, B와 C가 후견감독인이 된다면 어머니 사후에도 민호 씨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가정법원은 가사 및 소년 사건 전문 법원입니다. 혼인무효, 재산분할 등의 가사재판,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가정보호재판,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소년보호재판,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재판, 개명이나 출생확인 등 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을 담당합니다.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개원한 이후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수원 등에 가정법원과 지원이 설치되었어요.



서울가정법원

가정법원은 그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그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최근 우리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족 해체 등 가족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과 비행 소년에 관한 사건을 사후적으로 재판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가족 해체 위기에서 비롯된 당사자와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볼까요?

양육비 산정기준 제정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혼 소송 시 재판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객관적이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혼 후 자녀 양육비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양육비 현실화를 통하여 이혼 가정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공식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지원 사업

2008년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이혼 당사자에 대한 상담권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문제의 경우, 이혼 전후

에 상담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에 착안하여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 및 가족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들이 이혼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이혼 후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혼 가정의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은 물론 부부 집단 상담 및 집단 상담캠프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부부간 소통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절차를 선별하여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한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을 당사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조사관³⁾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은 국민의 사법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3) 전문조사관은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 각종 사건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과 원활한 재판진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재판부와 외부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 각종 사례 관리, 재판부의 조사·교육·조정조치 명령 등을 수행합니다.



취약계층의 보호



생각 돋보기

혹시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1988년 10월 8일, 500만 원을 절도한 자신보다 600억 원을 횡령한 정치인의 형기가 더 짧다는 데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를 탈출한 지강현 일행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절규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재판에서 패소하거나 형벌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재판 결과를 비꼬는 데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우리는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제도를 살펴봅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법에 근거해 1987년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과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먼저, 법률 상담은 방문 상담, 전화 상담(대표번호 132), 사이버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부딪치는 법적인 분쟁과 상담 사례, 각종 법률 서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해주거나 형사 변호를 해주는 법률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임금 등 체불피해 근로자,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청구인, 생활이 어렵고 법

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구조 대상 사건도 민사뿐만 아니라 가사, 형사, 행정심판, 헌법소원에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사례 - 정의로운 자를 위한 정의로운 법

-2016년도 하반기 법률구조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서울중앙지부)-

택시 기사 홍길동(가명) 씨가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 씨는 택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뺑소니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도주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그 차에 타고 있던 4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이에 홍 씨는 자신이 운행 중이던 택시로 뺑소니 차량을 뒤쫓아 갔습니다. 홍 씨가 도주 차량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주차량이 홍 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앞쪽으로 돌진하였습니다. 결국 홍 씨가 몰던 택시는 미끄러져 도로 옆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홍 씨는 이 사고로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홍 씨는 장애인단서를 발급받고 뺑소니 사고의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부상을 입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홍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홍 씨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찾아가 위 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 희생한 의뢰인에 대해 의사상자로서 정당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소송을 담당하기로 결정하고 소속변호사를 이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약 7개월 가까이 진행된 소송은 수많은 서면 공방과 법정 변론이 이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추격행위가 '뺑소니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가 아니고, 더욱이 의뢰인이 도주차량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당한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임변호사는 의사상자 인정에 관하여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송고한 뜻을 기리는 것이 의사상자법의 목적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추격행위는 민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도망하는 가해자로부터 사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몇 달 후 법원은 수임변호사의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 의뢰인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심

4) 의사상자: 직무의 행위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

판결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수임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의사상자 인정을 거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의 소극적이고 잘못된 처분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상처를 입고 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디 호소할 곳이 없는 의뢰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이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불신을 희망으로 바꾸어 가도록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소송을 진행해 가는 것이 수임변호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건강이 좋지 않아 직접 면담하는 것조차 곤란했던 의뢰인에게 전화와 서신 등으로 소송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변론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여 공단과 법에 대한 신뢰를 주고자 노력했던 수임변호사의 수고는 의뢰인 개인에 대한 고객만족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힌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우수사례

진술조력인제도



우리에게 영화 ‘도가니’로 알려지게 된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은 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2000년부터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말합니다. 학교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은 설립자의 가족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성폭행했으나 범죄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난 2005년까지 이러한 범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죠. 이후 한 교직원의 내부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청각장애로 인해 표현이 미숙하고 낮은 상황에 두려움을 가졌던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던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구제할만한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진술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진술조력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통해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은 미성숙한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일정 시간 진술조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에 실시할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론 진술을 돕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들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겠죠.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동반하는데요.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위로와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아동과 장애인의 편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진술조력인, 실제 사건이 이루어진 상황을 상상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진술보조인제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진술조력인제도와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의 진술보조인제도가 있습니다. 진술보조인제도가 아동이나 장애인의 진술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진술조력인제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진술보조인이 당사자와 밀접한 가족이나 동거인 등의 대리인이라는 점,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술보조인은 조력을 받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모든 종류의 기일에 당사자와 동석할 수 있고, 법원,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 모두의 진술을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 또는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출석한 당사자를 대신해서 별도의 소송 행위를 하거나, 다른 내용의 소송에 관한 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1권





법원은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형사사건에서는 증인들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내는 것 외에 증언의 필요성이나 형사재판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대기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방청석에 앉아 앞 사건을 보며 대기했다가 해당 사건의 순서가 되면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부터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인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제도란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증인 중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 아동·청소년·장애인 또는 강력범죄, 조직범죄, 보복 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피해자 등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그 밖의 증인들에게도 형사재판의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휴식·대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증인을 ‘특별증인’이라고 하고 후자의 증인을 ‘일반증인’이라 합니다.

특별증인지원의 경우, 증인이 증인지원관과 사전에 연락해 증언 전 미리 형사재판 진행 절차 등의 안내를 받거나 증언하게 될 법정을 답사할 수 있어요. 또한 증인신문 당일 법원에 도착해 자신의 증언 순서가 될 때까지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등 형사재판의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고, 휴식을 취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을 준비할 수도 있죠. 또한 증인신문 전후에 증인지원관과 동행해 증언 전후로 피고인이나 방청객과 마주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통해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언 후에도 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증인지원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화상증언실

인지원관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귀하 시까지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 등은 추후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선고 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증인지원의 경우, 일반증인지원실을 방문하는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증인들이 증인신문 전에 법원에 설치된 일반증인지원실을 방문하면 법정의 위치, 증인신문 시각, 재판진행절차 등을 안내받고, 대기·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증인의 증언은 진실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지원제도는 증인들에게 형사재판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증인신문 시 증인과 재판 관여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생각 돋보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강조했어요. 만약 유사한 사건인데도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형벌을 천차만별로 다르게 받는다면 재판을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재판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뉴스에서 끔찍한 범죄사건을 접할 때마다 범죄피해자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해자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힐 때는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먹먹해지죠. 이때 다수의 사람들은 법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정할까요?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가 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양형은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도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죠.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대법원 아래에 독립된 위원회로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통하여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국의 양형제도연구, 국민 전체의 양형인식조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절차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고 이미 설정된 양형기준에 대하여도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진다면 불공정한 판결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릭! 인터넷 검색!

Q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인신보호제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과거에는 정신질환자가 아닌데도 정신병원에 감금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

이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입원 의견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 재산이나 관계를 문제 삼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청각장애인 23년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부인이 재산 갈취’ 사례와 같이 말이죠.



‘청각장애인 23년간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부인이 재산 갈취’

청각장애를 겪고 있던 최 씨(61세)의 부인 김 씨(61세)는 지난 1983년 남편 최 씨를 무허가 정신요양원에 보호자 자격으로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23년간 14회에 걸쳐 전국 여러 곳의 정신병원에 최 씨를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최 씨의 다른 가족들이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자인 김 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퇴원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 씨는 2006년 2월 미국에서 돌아온 동생의 도움으로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사이 김 씨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챙긴 다음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근 최 씨는 정신감정을 통해 정신장애자가 아님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문제가 되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구 정신보건법의 내용은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었다면? 인신보호법을 통한 인신구제를 청구하면 됩니다. **인신보호제도**란 잘못된 행정처분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 요양소, 기도원 등의 수용시설에 입원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에 수용된 피수용자와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시설에 갇힌 본인이 청구하기 어렵다면 소용이 없겠죠? 현행법에 따라 병원 내에 구제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두어 혼자서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신보호제도 통합콜센터(1661-9797)를 통해 상시로 상담할 수 있어요.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 (출처: 네이버영화)

외국의 법정 영화를 보면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에서도 배심원들의 격론 끝에 일급 살

인 용의자로 체포된 빈민가 출신 소년에 대해 유죄로 평결을 내리려고 하죠. 하지만 이때 8번 배심원은 검찰이 제시한 여러 증거의 논리적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른 배심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무죄 쪽으로 쏠리고, 끝까지 설득당하기를 거부하던 나머지 배심원들도 반박하던 중에 자기모순에 빠져 결국 무죄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모두를 설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배심원단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치열한 논쟁과 고민이 이루어진 덕분에 소년은 무죄 판결로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상황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살인, 고의로 남에게 상처를 입혀 죽게 한 사건 등 흉악한 범죄에 해당되는 형사재판에 한해서 일반 국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 절차에 참여해요. 공정하지 않거나 법에 어긋나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지요. 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권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여러분도 배심원을 하고 싶다고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해요.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을 통해 배심원 후보자가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배심원에서 제외됩니다. 배심원의 수는 사건에 따라 5~9인이며, 배심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법정 배치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상식들을 O, X로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나오려는 통지서를 받았다. 중요한 회사 일이 있어 나가기 힘들 경우 법원에 특별히 연락할 필요는 없다.

✗ 반드시 법원에 '못 나간다'고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법률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거든요. ▶만 70세 이상이거나 ▶배심원 직무로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등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 배심원 후보에서 배제되는 직업군이 있다.

○ 다음과 같은 직업군은 배심원 후보군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등입니다. 그 외에도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이거나 동원·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도 배제됩니다.

☑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할 우려가 있더라도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

✗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배심원·예비 배심원을 위해 보호·격리·숙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심각한 위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법원 측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2010.12.17. <http://news.joins.com/article/4804635>



사진 출처

☑ p.38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판사

동아일보. 대한민국 판사. 전영한 기자. 2013.11.09.

<http://news.donga.com/Society/more29/3/all/20131109/58779099/1#csidx420ec0df8d05faf91626de6fefe81e8>

☑ p.39 첫 시각장애인 판사 임용

연합뉴스. <사람들> 첫 시각장애인 판사 임용 최영씨. 나확진 기자. 2012. 02. 1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2/16/0702000000AKR20120216204300004.HTML>

☑ p.40 권오곤 재판관

뉴스시. ICTY 권오곤 부소장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강재순 기자. 2011. 10. 1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11011_0009428425

☑ p.54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

<https://www.icc-cpi.int/CourtStructure/Pages/judge.aspx?name=Judge%20Chang-ho%20Chung>

☑ p.65 수원지방법원 지원실

법원 영블로거 위원회가 전하는 따뜻한 법이야기- 여성, 아동, 장애인을 위한 증인지원실 안내

http://blog.daum.net/law_zzang/8555930

☑ p.70 12명의 성난 사람들

네이버 영화

<https://movie.naver.com/movie/bi/mi/photoView.nhn?code=13440>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1**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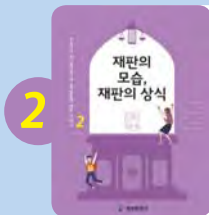
발 행 일	1판 1쇄	2019. 10.
	1판 2쇄	2020. 08.
	1판 3쇄	2021. 12.
집 필 진	연 구 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성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곽한영(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김현철(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지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자	김경래(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이수진(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
		전진현(신반포중학교 교사)
		황선영(서창고등학교 교사)
발 행 처	법원행정처	
	T) 02.3480.1262	
	F) 02.593.2641	
디자인/인쇄	(주)홍디자인	02.464.5167
인 쇄	(주)마이컴피앤씨	02.2273.6153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여러 사건과 인물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법제도의 영향력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법과 사법제도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사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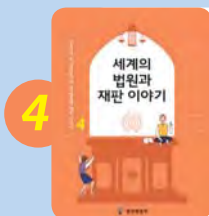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법을 적용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를 재판이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비롯해 재판의 판단 원칙, 종류, 절차 등 다양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재판 이야기가 쏙쏙 이해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재판 이야기

판례란 법을 통해 해결한 여러 사건의 결과를 모은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통해 법이 어떻게 갈등을 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왔는지 알아봅시다. 책에서 소개한 판례의 의미를 친구와 함께 토론했다 보면 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세질 것입니다.



세계의 법원과 재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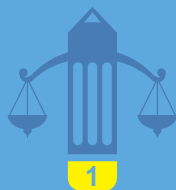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고유의 법을 만들어 정의를 구현해 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만국 공통일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법과 법원, 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봅시다.



교과서 속, 법으로 사는 세상

우리는 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집, 학교 어디서든 우리는 법과 만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권의 보장과 법', '일상 생활과 법', '청소년 생활과 법'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삶과 떼어 뗄 수 없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판과 법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만든 법교육 교재입니다. 대법원 및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위 책자의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 이야기

